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2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용만 · 강준현 · 김남근
김승원 · 문진석 · 박상혁
박지원 · 윤후덕 · 이정문
전현희 · 천준호 · 최혁진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관한 사항

제32조제3항 중 “권고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3.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u>
	<u>요청에 관한 사항</u>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② (생 략)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u><후단 신 설></u>	③ ----- ----- ----- ----- --- <u>요청할</u> -----. <u>이 경우 개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